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개설〉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68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개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5. 3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

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개설

□ 개정안은 은행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으로 1월간의 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이 다른 은행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여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¹⁾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 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3(생계비계좌) ① 은행은 예금자(자연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

1)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의 강제적 행위

현행	개정안
	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 등 금전채권²⁾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음³⁾.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법원의 결정인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은행 등)는 채무자(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이 금지됨.

○ 다만,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급여채권, 퇴직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각종 청구권

3)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개별법은 각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압류금지 채권 >

구 분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법령에 따른 압류가 금지된 권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1항) 수급품을 받을 권리 → (제35조제2항)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연금수급권 → (제58조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제38조제2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제88조제3항)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의료급여법 제18조제1항)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 (제18조제2항)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 (제27조제2항)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등 다수

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2005년 120만원 이하, 2011년부터 150만원 이하, 2019년부터 185만원 이하

- 그런데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인 수급권자의 급여 등이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⁵⁾, 이로 인해 수급권자의 급여 등이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별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급여 등이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⁶⁾ 전용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소위 ‘압류방지통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⁷⁾.

5)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압류방지통장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음.

＜ 개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및 압류방지통장 ＞

법률	전용계좌	압류금지 예금채권	압류방지 통장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만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27조의2)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제35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법	급여만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제58조제3항)	국민연금 안심통장
고용보험법	실업급여만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37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제38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보험급여만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82조)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제88조제3항)	행복지킴이 통장
의료급여법	요양비등만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12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제18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한부모가족 지원법	복지급여만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12조의5)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제27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이하 ‘생계비’)”은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압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금융기관이 특정 예금 채권의 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시 채무자의 모든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임⁸⁾. 이로 인해 채무자가 「민사집행

8) 은행은 압류에 의해 채무자(예금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며(「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안게 되는 반면, 은행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압류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은행은 생계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향이 있

법」에 따른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를 인출하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는데⁹⁾, 범위변경 신청 등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¹⁰⁾ 채무로 인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수급권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계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생계비 압류금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등 수급권자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압류금지통장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을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예금 압류 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생계비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계비계좌 외의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도 「민사집행법」 제246

음.

9)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고 있으며, 대법원은 그 성질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대법원2014.7.10. 선고 2013다25552판결)

10)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2주에서 1달이 소요되며, 인지세, 송달료, 법무사 수임료 등이 발생함.

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생계비)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은행법」이 아닌 개별법(「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우편대체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종합금융회사 등)에도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생계비계좌 은행 개설로 인해 주거대출 및 요구불예금이 이동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신용협동조합법」 등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개정안은 압류금지 금액을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은행법령에서 압류금지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의 취지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은행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민사집행법령¹¹⁾을

11) 민사집행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압류금지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과 압류금지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를 합하여 185만원임.

준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은행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에서 직접 「민사집행법」의 압류 금지 급여액을 인용한 사례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인용한 사례가 있음.

< 관련 입법례 >

구 분	조 문
법률에서 직접 민사집행법을 인용한 사례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생략)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인용한 사례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생략)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셋째, 개정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금액만을 대통령령에 위임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하고 있으나, 생계비계좌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계좌 조 회를 위한 절차 등 생계비계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 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개정안은 생계비계좌의 중복 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 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식별값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¹²⁾에 따라 은행이 이용자의 동의만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 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 생계비계좌 개설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¹³⁾.

○ 또한, 개정안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는 경우 해당 예 금자의 다른 계좌(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계 좌로의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계좌해지, 입금정지 등¹⁴⁾) 이를 해소 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관련 사항을

1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13) 【참고자료】 계좌조회 등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둔 입법례

14) 채무자가 예금압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좌압류 전 계좌에 대한 입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하위 법령에서 이를 규율하여야 할 것임.

□ 그 외에, 개정안은 개정 주요 내용이 은행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사항이고 은행의 예금 압류 실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요 예금취급기관인 은행을 규율하는 「은행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 법률이 압류금지채권 규정,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압류 금지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생계비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생계비계좌 개설 및 계좌압류 금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이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생계비계좌 개설 및 계좌압류 금지를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 상호간 규범 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므로 법률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법체계적 정합성이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채무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라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판례¹⁵⁾에 따르면, 헌법상 체계정당성이란 법령체계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규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고, 체계정합성의 원칙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근거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됨.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에서는 1인 1생계비계좌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5) 전원재판부 2002헌바 66, 2004.11.25.

**【참고자료】 계좌조회 등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둔 입법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공제금·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이하 생략)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문 의 처
02)6788-5104